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스마트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구분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60세형	계약일부터 6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60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65세형	계약일부터 65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65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70세형	계약일부터 7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70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전환나이: 60세, 65세, 70세

나.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1) 제2보험기간 사망보험금 지급률이 30%인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60세형	65세형	70세형	
5년납	만15세~55세	만15세~60세	만15세~60세	월납
10년납	만15세~50세	만15세~55세	만15세~52세	
15년납	만15세~45세	만15세~50세	만15세~47세	
20년납	만15세~40세	만15세~45세	만15세~43세	
55세납	만15세~50세	만15세~50세	만15세~50세	
60세납	만15세~55세	만15세~55세	만15세~55세	
65세납	-	만15세~60세	만15세~37세	
70세납	-	-	-	

(2) 제2보험기간 사망보험금 지급률이 50%, 70%인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60세형	65세형	70세형	
5년납	만15세~55세	만15세~60세	만15세~60세	월납
10년납	만15세~50세	만15세~55세	만15세~60세	
15년납	만15세~45세	만15세~50세	만15세~55세	
20년납	만15세~40세	만15세~45세	만15세~50세	
55세납	만15세~50세	만15세~50세	만15세~50세	
60세납	만15세~55세	만15세~55세	만15세~55세	
65세납	-	만15세~60세	만15세~60세	
70세납	-	-	만15세~60세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성별과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가입금액 등에 따라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말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기간 중에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의 1회 최저납입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다. 보험료 납입한도

(1)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이

하 “기본보험료 총액”이라 한다)의 200%이며, 계약자격립금 중도인출이 있 을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보험료의 납입한도로 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연간납입한도는 매년 (기본보험료 × 12 × 200%)로 한다.
- (3)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1)’ 및 ‘(2)’의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가.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의 고액계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계약 기본보 험료를 할인한다.

할인조건	할인금액
보험가입금액 1억원 미만 (다만, 9,6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없음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다만, 1억 9,700만원 초과 2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3.0%
보험가입금액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다만, 2억 9,6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4.0%
보험가입금액 3억원 이상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5.0%

나. ‘가’에 따라 고액계약 할인이 적용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 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매월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월대체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계약관리비용은 고액계약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에 3개월분 이상(최대 35개월분까 지)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한하여 선납이 가

능하다.

- 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표준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하며,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표준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 납입기일에 대체한다.
- 다.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에는 선납을 취급하지 않는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다음의 금액과 「표준이율 + 1.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에 실효된 경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까지는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이상의 금액,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는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이상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 배수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실효된 경우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이상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 배수

- 나. 변액보험은 ‘가’의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부활(효력회복)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 다. ‘가’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회사는 연체이자 및 미납

된 월대체보험료를 납입된 연체보험료에서 공제한다.

라. ‘가’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기본사망보험금은 부활(효력회복)시점의 보험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제1보험기간 중 부활(효력회복)을 할 때 기본사망보험금은 해지시점의 기본사망보험금으로 한다.
- (2) 제2보험기간 중 부활(효력회복)을 할 때 기본사망보험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아래의 지급률(이하 “제2보험기간 사망보험금 지급률”이라 한다)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제2보험기간 사망보험금 지급률		
지급률	30%	50%	70%

다만, 계약이 해지된 날까지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있을 경우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합계액을 더하고, 계약자적립금에서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중도인출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마. 해지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을 할 때에는 해지된 날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계약자적립금과 ‘가’에서 납입한 금액 중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연체된 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 대해 표준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에서 월대체보험료(연체된 월대체보험료에 대해 표준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를 차감한 금액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바. ‘마’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1)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가 완납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3영업일」
- (2)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3영업일 이내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3영업일」
- (3)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3영업일이 지난 후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낙일

사. ‘가’에도 불구하고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한 이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

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하지 않는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표준이율 + 1.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적용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보험년도 기준 연 4회(월 1회에 한함)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 이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 (1)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 4회(월 1회에 한함)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다.
- (2)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다. 계약자적립금 중도인출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신청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또한,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나’의 경우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한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신청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보험계약대출이율 - 1.5%」로 계산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계정으로 적립한다.

다.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상환일부터 「상환일 + 제3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후 「상환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보험계약대출적립금계정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라. 회사는 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마.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 (1) 36개월분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의 납입이 완료되고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부터 납입되는 보험료의 경우 보험료의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가 「기본보험료 총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본보험료로 보며,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보험료를 추가납입보험료로 본다. 다만, 「기본보험료 총액」에 도달할 때까지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본보험료(특약이 포함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 중도인출로 기본사망보험금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총액」 도달여부 및 연간납입한도와 상관없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기본사망보험금 감소분 이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다만, 기본사망보험금의 감소란 기본사망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하며, 그 감소된 금액을 기본사망보험금 감소분이라 한다.

14. 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면, 회사는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특별계정투입보험료(이하 “특별계정투입보험료”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나. ‘가’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1) 제1회 보험료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과 승낙일 중 늦은 날
- 이체금액 :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 후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까지는 표준이율로 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한 금액

(2) 제2회 기본보험료

① 「월계약해당일 - 제3영업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월계약해당일」과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중 늦은 날
- 이체금액 :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월계약해당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

② 「월계약해당일 - 제2영업일」,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납입일 + 제3영업일」과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중 늦은 날
- 이체금액 :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월계약해당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

③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납입일 + 제3영업일」
- 이체금액 : 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3영업일」 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

(3) 제3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①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에 납입한 경우

ⓐ 「월계약해당일 - 제3영업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월계약해당일」
- 이체금액 :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 「월계약해당일 - 제2영업일」,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납입일 + 제3영업일」
 - 이체금액 :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월계약해당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
- ④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납입일 + 제3영업일」
 - 이체금액 : 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3영업일」 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
- ②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납입일 + 제3영업일」
 - 이체금액 :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서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을 차감한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3영업일」 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
- (4) 추가납입보험료의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납입일 + 제3영업일」
 - 이체금액 :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3영업일」 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

15.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납입면제보험료 포함)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으로서 해당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때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월 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할 때에는 해당월 계약해당일에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한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해당월의 위험보험료(납입면제보험료 포함),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으로서 매월 계약해당일에 특별계정계약

자적립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 공제한다.

16.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정한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월계약해당일에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부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정한다.

17. 계약자격립금의 계산

이 보험의 계약자격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8.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계약자격립금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 「\text{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 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직전 } 「\text{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다. ‘나’의 ‘감액(또는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또는 인출)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나’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19. 보험가입금액 감액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을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부터 감액할 수 있다.

나.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감액으로 변경되는 월대체보험료는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한다.

라.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20.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변액보험의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펀드운용실적이 매일 평가되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된다.
- (2)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한다.
- (3)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특별계정 운용보수(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하며, 이하 같다)는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 (4)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에 따라 계산하여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으로 평가한다.
- (5)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적용한다.

나. 펀드의 유형

(1) 펀드의 유형

- ① 채권형: 채권[국공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 등을 포함한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5%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로써,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의 “채권형(설정일 2006년 7월 24일)”으로 한다.

② 혼합1형: 채권[국공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등을 포함한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8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로써,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의 “혼합1형(설정일 2006년 7월 24일)”으로 한다.

- (2) 상기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운용되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 (3) ‘(1)’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새로운 펀드를 추가할 수 있다.
- (4)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1)’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가격변동 등의 사유인 경우 3개월 이내, 해지 등의 사유인 경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특별계정 운용보수에 관한 사항

- (1) 펀드 종류별 운영보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운영보수
채권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391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0712329%)
혼합1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661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8109589%)

- (2) 펀드 종류별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다음을 한도로 한다.

구분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7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1917808%)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혼합1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10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2739726%)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 (3) ‘(2)’에서 정한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의 경우, 실제 지급한 보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회사는 운영보수에서 그 초과분을 충당한다.
- (4) 특별계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1)’ 및 ‘(2)’에서 정한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 이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 수수료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한다.

라. 펀드의 선택 및 변경

- (1)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나’에서 정한 펀드 중 1개의 펀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계속 납입되는 보험료의 펀드 변경 및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나’의 ‘(3)’에 따라 새로운 펀드가 설정되는 경우 계약자는 추가로 설정된 펀드로 계속 납입되는 보험료의 펀드 변경 또는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 (3) 회사는 ‘(1)’ 및 ‘(2)’에 따른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전요구일 + 제5영업일」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다만, 최저 펀드 이전 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 (4) 회사는 ‘(1)’ 및 ‘(2)’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변경 대상 계약자적립금의 0.1%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3)'의 현금이전을 할 때 공제한다. 다만, 펀드 변경을 할 때 수수료는 연 4회까지 면제된다.

- (5) 회사는 현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3)'에서 정하는 날까지 펀드적립금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향후 펀드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5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마. 자산의 평가 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다.
- (2) '(1)'에 따른 특별계정자산의 평가는 특별계정별로 적용한다.

바.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1) 좌수

특별계정을 설정할 때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다만,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사. 초기투자자금

-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2) '(1)'에서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①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② '①'의 규정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 ③ '①' 및 '②'의 규정에 따른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아.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자.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 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한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2)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계약자에게 매 3개월마다 제공한다.

자. 특별계정의 폐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 ① 해당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② 1개월간 계속하여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가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③ 해당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④ ‘①’ 내지 ‘③’ 사항에 준하는 경우
- (2) 회사는 ‘(1)’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 (3) 회사는 ‘(2)’에 따라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1.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14. 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따라 이체함)
- (2)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이 있는 경우
- (3) 기타 회사가 인정한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1)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2)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 (3)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4)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5) 매월 계약해당일에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는 경우
- (6)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하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 (2) '(1)'에 따라 자금이체를 하는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22. 보증준비금에 관한 사항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보증준비금을 평가한다.

23. 최저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 기본사망보험금을 말한다.

나. '가'에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예정 적립금이 “0”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 '나'에서 「예정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예정적립금을 계산할 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반영하지 않는다.

라.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 계약은 자동 해지 처리된다.

24.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사망보험금

「기본사망보험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계약자적립금의 105%」

중 가장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나. 기본사망보험금

‘가’에서 「기본사망보험금」은 보험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제1보험기간 중에는 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때에는 추가납입 전 기본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중도인출을 할 때에는 중도인출 전 기본사망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2) 제2보험기간 중에는 제2보험기간 사망보험금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제2보험기간 사망보험금 지급률		
지급률	30%	50%	70%

다만,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때에는 추가납입 전 기본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중도인출을 할 때에는 중도인출 전 기본사망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다만, 제2보험기간이 개시될 때 「기본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제2보험기간 사망보험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에서 제1보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합계액을 더하고, 중도인출한 중도인출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5. 기타

가. 보험가입금액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이 보험에 부가되는 선택특약은 일반계정에서 운용한다.

다.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체결 이후 보험기간 동안 분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보험금액 변동에 관한 사항

(2)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지시 해지환급금

라. 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년도가 종료될 때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감독원에 보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특별계정 총 좌수
- (2) 특별계정 기준가격
- (3) 특별계정 자산총액
- (4) 특별계정 자산운용 연평균 수익률
- (5) 특별계정 자산구성내역 및 비율
- (6) 특별계정 자산구성비율 변동내역
- (7) 특별계정 운용보수
- (8)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마.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바.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유가족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1)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유가족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된다.
- (2)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유가족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점의 기초서류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 한다.
- (3) 연금전환을 위한 전환일시금은 「연금전환 신청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한 전환전 계약의 해지환급금으로 하며, 전환시점은 「연금전환 신청일 + 제3영업일」로 한다.

사.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서 상 서명을 통해 보험료 납입이 없더라도 계약유지를 위해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됨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